

TPP가 보건의료시스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

2015.11.1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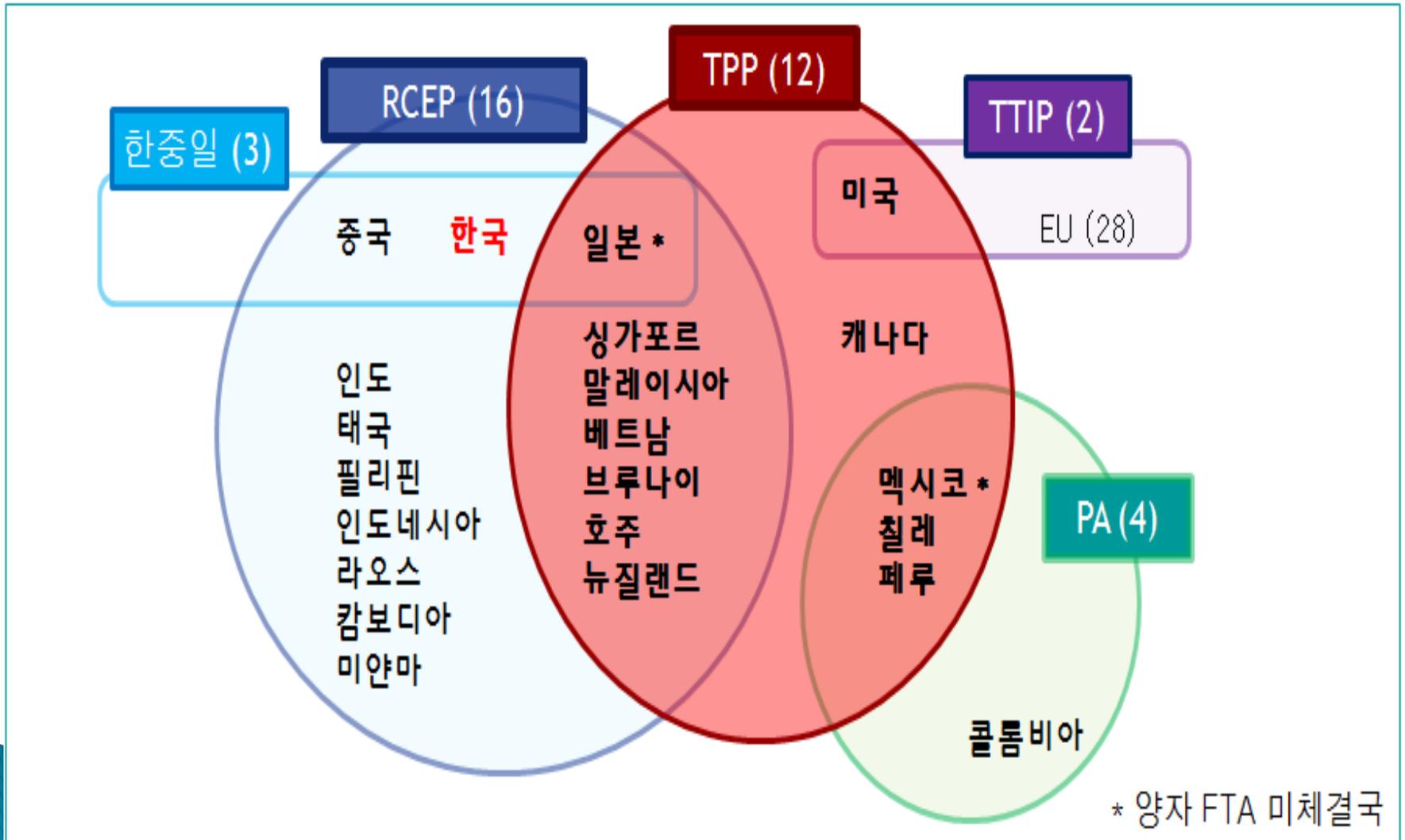
TPP 구조

< 참고 : TPP/ 한미 FTA 챕터 비교 >

	TPP (30개)	한미 FTA (24개)
1	최초규정 및 정의	
2	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	상품
		농업
3	원산지	
4	섬유 및 의류	
5	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	
6	무역구제	
7	위생 및 식물위생조치	
8	무역에 대한 기술장벽	
9	투자	
10	국경간 서비스 무역	
11	금융서비스	
12	기업인의 일시입국	無
13	통신	
14	전자상거래	
15	정부조달	

15	정부조달	
16	경쟁	
17	국영기업	無
18	지식재산권	
19	노동	
20	환경	
21	협력 및 역량 강화	無
22	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	無
23	개발	無
24	중소기업	無
25	규제 조화	無
26	투명성 및 반부패	투명성
		의약품 및 의료기기
27	행정 및 제도규정	1개 챕터
28	분쟁해결	
29	예외	
30	최종규정	

메가 FTA 시대



지정학적 합의 TPP vs RCEP

APEC談區域經濟整合

RCEP vs. TPP

區域全面經濟夥伴協定

跨太平洋夥伴協定

RCEP :

汶萊、柬埔寨、印尼、寮國、馬來西亞、緬甸、菲律賓、新加坡、泰國、越南等東南亞國家協會10個會員國，以及中國、日本、韓國、澳洲、紐西蘭和印度等6國。又稱「東協10+6」。

RCEP+TPP :

汶萊、紐西蘭、新加坡、澳洲、越南、馬來西亞、日本

TPP :

汶萊、智利、紐西蘭、新加坡、美國、澳洲、秘魯、越南、馬來西亞、墨西哥、加拿大及日本。

中央社製圖

■ RCEP ■ TPP ■ BOTH

中央社製圖

보건의료시스템과 직접적 관련 내용

- ▶ 의약품, 의료기기
- ▶ 지적재산권
- ▶ SPS
- ▶ 금융서비스
- ▶ 투자
 - ISDS

TPP : 전략적 모호성

- ▶ 의약품 및 의료기기
 - Independent process(body) review or internal review
- ▶ 지적재산권
 - Patent -approval linkage
 - Notifying and dispute resolution
 - Automatic stay
 - Data exclusivity
 - Biologics data exclusivity
 - 8년 혹은 5년

▶ 투자

- 특허 등 지재권 투자내용에 포함
- ISDS 대상에 최소기준대우(minimal standard treatment, MST), 간접수용(indirect expropriation) 포함
- 건강, 환경 등 예외규정 (그러나 rare case 예외의 예외)

▶ 금융서비스

- 금융정보 해외이전 (민영의료보험)
- 그외 temporary safeguard 18개월, 그러나 보상의무 및 ISDS 대상임

▶ SPS

- 국제기준 준수
-

한미FTA 플러스

▶ 선결조건

- 미국 및 일본 선결조건
- 예를 들어 일본의 방사능 식품, 미국의 쇠고기
- 의약품 투명성 조항 전제 이행 (호주 현재 미-호주 FTA 규정 준수 조항 합의)
- 자동차 배기가스 환경기준
- GMO 수입, 표시제 등

▶ 환율협약과 연계

- TPP 협정문에는 투자내용에 간접적 규정이 있으니 직접적 규정 없음. 그러나 별도의 환율관련 협약과 연계될 가능성이
- 부속합의를 통해 환율조작에 대한 합의(강제성 없는 합의)를 할 가능성.
- 자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위해 화폐 가치를 평가절하 않으며, 통화정책의 투명성 강화, 환율정책 논의를 위한 별도의 기구

▶ 환경:

- 람사르 협약,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 협약, 국제포경 규제협약.

▶ 투자:

- 담배규제에 대한 적용 배제,
- 그외 형식적인 규제가 있었다고는 하나 유의미한 변화 없음

▶ 규제정합성(regulatory coherence):

- 기존의 FTA에는 없음, 각국의 행정규제를 통합, 공적 규제에 대한 시장의 전면적 통제 시도

▶ 국영기업 : 한미FTA 보다 일부 강화된 규정있음